

외국인유학생입학전형에관한규정

5-2-13

규정번호 5-2-13
제정일자 2018.8.27
최근개정 2026.7.20
개정차수 2차 개정
관리부서 글로벌교육팀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전형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정의) “외국인 유학생”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,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하며, 정규 학위과정에 입학하려는 자 혹은 정규과정 재학생을 의미한다.

제 3 조(입학자격) 매 학년도 모집요강의 입학자격을 준수한다.

제 4 조(입학지원절차) 입학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입학원서를 작성한 후 총장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전형료를 첨부하여 입학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① 일반적인 전형절차는 매 학년도 모집요강을 준수한다.

②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발급에 필요한 자격 요건(매년 출입국관리사무소 지침 및 모집요강에 명시)을 갖추어야 한다.

제 5 조 (수학을 위한 체류자격) ① 외국인 유학생은 본교에 재학하는 동안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체류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②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 상 체류자격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체류기간 만료 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체류자격을 유지해야 한다.

제 6 조 (비자발급) 외국인 유학생이 입학에 필요할 경우 사증발급인정신청 혹은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하여 국내 입국을 지원한다. 사증발급인정신청 및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시 제출서류는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관리지침에 의거한다.

제 7 조 (비자) 외국인등록, 체류기간의 연장, 체류자격 변경, 재입국 허가, 체류자격외활동 허가, 주소지 변경 등 비자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다.

제8조(주무부서) 외국인 유학생 입학에 관한 주무부서는 국제교류본부 글로벌교육센터로 하며, 지원부서는 교무처 교무입학팀으로 한다.(개정 2019.06.17., 2026.7.20.)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5-2-13 외국인유학생입학전형에 관한 규정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.(제8조)